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필용의원의외 6인

2. 발의 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4년 10월 13일
-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4일

3.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를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기획행정위원회 직무관련 소관 실과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추가
- 관광건설위원회 직무관련 실과중 바이오산업 추진단 추가
-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부조항에서 "본회의의" 의결이나 "도회의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비(제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직 개편으로 자치행정국에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을 각각 기획행정 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정비하고,
-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시, 본의회의 또는 도의회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로 그동안 잘못되어 있는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 임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정	1991. 4. 6	조례 제1907호
개정	1991. 6. 28	조례 제1921호
	1992. 1. 31	조례 제1975호
	1992. 10. 23	조례 제2000호
	1993. 7. 2	조례 제2067호
	1994. 2. 18	조례 제2114호
	1994. 7. 22	조례 제2134호
	1995. 4. 28	조례 제2189호
	1995. 6. 23	조례 제2206호
	1996. 3. 11	조례 제2255호
	1997. 1. 17	조례 제2305호
	1998. 3. 6	조례 제2373호
	1998. 4. 3	조례 제2382호
	1998. 6. 26	조례 제2393호
	1998. 10. 16	조례 제2414호
	1998. 11. 27	조례 제2423호
	1999. 4. 7	조례 제2445호
	1999. 11. 23	조례 제2525호
	2000. 7. 12	조례 제2597호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
	2001. 3. 9	조례 제2650호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2002. 5. 31	조례 제2707호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6.23, 98. 6.26, 98.10 16)

1. 의회운영위원회 8인
2. 기획행정위원회 7인
3. 교육사회위원회 6인
4. 산업경제위원회 6인
5. 관광건설위원회 7인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 처리등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5. 6. 23)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 7. 2, 98. 6. 26, 98. 10. 16)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98. 3. 6)
-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5.4.28, 96.3.11, 98.3.6, 98.6.26, 98.10.16, 98.11.27, 99.11.23, 2001.9.13, 2002. 5. 31)
 - 나. 지방공사청주·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8.6.26, 98.10.16, 2003. 8. 29)
- 3. 교육사회위원회
 - 가. 교육청,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6.26, 98.10.16)
 - 나.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6.3.11, 98.3. 6, 98.6.26, 98.10.16, 2000. 7. 12)
- 4. 산업경제위원회 (98. 6. 26)
 -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4.7.22, 98.3. 6, 98.6.26, 98.10.16)
 - 나. 농업기술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4.7.22, 96.3.11, 98.6.26, 98.10.16)
- 5. 관광건설위원회 (개정 98.6.26, 98.10.16)
 - 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5.4.28, 97.1.17, 98.3. 6, 98.6.26, 98.10.16, 2001. 9. 13, 2002. 5. 31)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같을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 또는 개선(改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8. 3. 6)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98. 3. 6)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 7. 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뜻을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改選)) 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4.2.18, 98.3. 6)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94.2.18, 개정 98.3. 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8. 4. 3)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3. 9)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3. 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 3. 9)

④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99.4.7, 개정 2001. 3. 9)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1952. 6. 3 조례 제11호)는 폐지한다.

부 칙(1991. 6. 28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 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23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22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23 조례 제2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1996. 3. 11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6 조례 제23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를 "윤리특별위원회" 로 한다.

부 칙(1998. 4. 3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 26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6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7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7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23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2 조례 제2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나목중 "육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한다.

부 칙(2001. 3. 9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2. 5. 31 조례 제2707호)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